



한남대학교 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## 업무협약서



한남대학교(이하 “한남대” )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이하 “농정원” )은 상호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, 각 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한남대와 농정원(이하 ‘양 기관’ 이라 한다)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농식품분야 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후속지원 전문성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역량과 정보를 공유·활용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,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및 조건 등은 필요 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농림축산식품 공공·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 관련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·강화
2. 창업지원 프로그램, 교육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 교류
3.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한 관련 제반사항 이행 및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(농정원 임직원 대학원 학비 감면 등)

**제3조(상호 업무지원)** 양 기관은 협력대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한다.

**제4조(협약의 효력 및 변경)** 본 협약의 효력은 한남대와 농정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1.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

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약의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.

**제6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**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관 간 어느 일방의 협약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협약의 변경)**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기관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약의 준수)**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19일



한남대학교  
총장 이 광 섭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
원장 이 종 순

이 | 광 섭

이 | 종 순